

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

서울특별시 “마포구”(각 구의 “동주민센터”를 포함, 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“울림두레돌봄센터”(이하 “제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「돌봄SOS센터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구”와 “제공기관”의 「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」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신의 성실의 원칙)

“구”와 “제공기관”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기간)

- ① 협약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- ② 협약기간은 협약 만료 30일 전에 협약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.

- ① “구”는 「돌봄SOS센터」로 접수된 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기재하여 “제공기관”에게 서비스 의뢰한다.
- ② “제공기관”은 “구”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체결, 보험가입, 이용금액 안내 등의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며,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“구”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- ③ 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“구”에 제출한다.
- ④ “구”는 “제공기관”의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협의된 서비스 수가기준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“제공기관”에게 지급한다.

제5조(서비스 비용 정산)

- ①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‘서비스의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표’에 따르며 이에 근거한 비용 산정을 통해 “제공기관”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“구”가 지급한다. 단, 서비스 비용 전액 자부담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“구”와 “제공기관”이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후 지급할 수도 있다.
- ② 서비스 비용 정산은 “월별” 정산으로 정한다. 필요시 “구”와 “제공기관”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보안 및 안전관리)

- ① “제공기관”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등 업무관련으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② 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관리(자격증, 비밀보장, 성범죄 이력조회 등) 및 안전관리,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인력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부 등의 비치)

“제공기관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확히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- ① “제공기관”은 “구”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본 약정체결 후 “구”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.
- ② “구”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“제공기관”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
 2. “제공기관”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,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
 3. “제공기관”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“구”가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협약의 효력 등)

-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구”와 “제공기관”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준용)

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2022 년 7 월 8 일

“구” : 서울특별시 마포구 (마포구 월드컵로 212)

대표자 마포구청장 박강수



“제공기관” : 올림두레돌봄센터 (마포구 동교로12안길 23, 3층)

대표자 고은주

